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2012.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 명시(안 제3조)

- 도청소재지인 시지역내 부동산 취득 : 100분의 25 경감
- 이외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 : 100분의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경감율을
조례로 규정

-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정조건 추가 신설 (안 제10조)
 -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12조)
 - 감면기간이 업무개시일(2010. 11. 3)부터 2년 이내로서 기간 만료

- 조문 번호 변경 및 일부 자구 정비 등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3년)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2.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 명시 조례에 명시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정조건을 추가 신설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